

2024. 1. 24.(수), 14:00~16:00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튼튼한 지원으로 기업을 이롭게!’

2024년 『정부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

2024. 1. 24.(수)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순천시
Suncheon-s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전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2024년 『정부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 개요

□ 일시: '24년 1월 24일(수) 14:00~16:00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본관 1층 대강당

□ 주최 및 참여기관

주최	여수고용노동지청		
참여기관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	

□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3:50~14:00	10'	■ 현안 환담(본관 4층 학장실)			지청장·학장
14:00~14:05	5'	■ 지청장 인사 말씀			지청장
13:40~14:00	20'	■ 방명록 서명			참여기업
14:05~14:20	15'	■ 고용노동부 시책 설명			여수지청
14:20~15:50	90'	■ 유관기관 시책 설명	순천시	15'	기관 담당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한국폴리텍대학	15'	
			한국산업인력공단	15'	
			안전보건공단	15'	
			근로복지공단	15'	
15:50~16:00	10'	■ 질의·응답			기관 담당자
16:00		■ 폐회			
14:00~16:00	120'	■ 상시 상담 창구 운영			여수지청

※ 설명회 자료, 내용 관련 문의

여수고용노동지청	순천고용센터	취업지원	김용운	☎ 061-720-9126
		고용장려금	남윤미	☎ 061-720-9150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	박재규	☎ 061-650-0127
	산재예방지도과	산재예방	박은진	☎ 061-650-0131
	지역협력과	외국인	김종구	☎ 061-720-9136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	박성은	☎ 061-749-44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팀	정책자금	우민석	☎ 061-729-1550
한국폴리텍대학	교학처	인력양성	백현희	☎ 061-720-1514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부	훈련지원	주 희	☎ 061-720-854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재해예방지원	김종률	☎ 061-689-4953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	퇴직연금	임성숙	☎ 061-805-0204

☞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설명회 자료 게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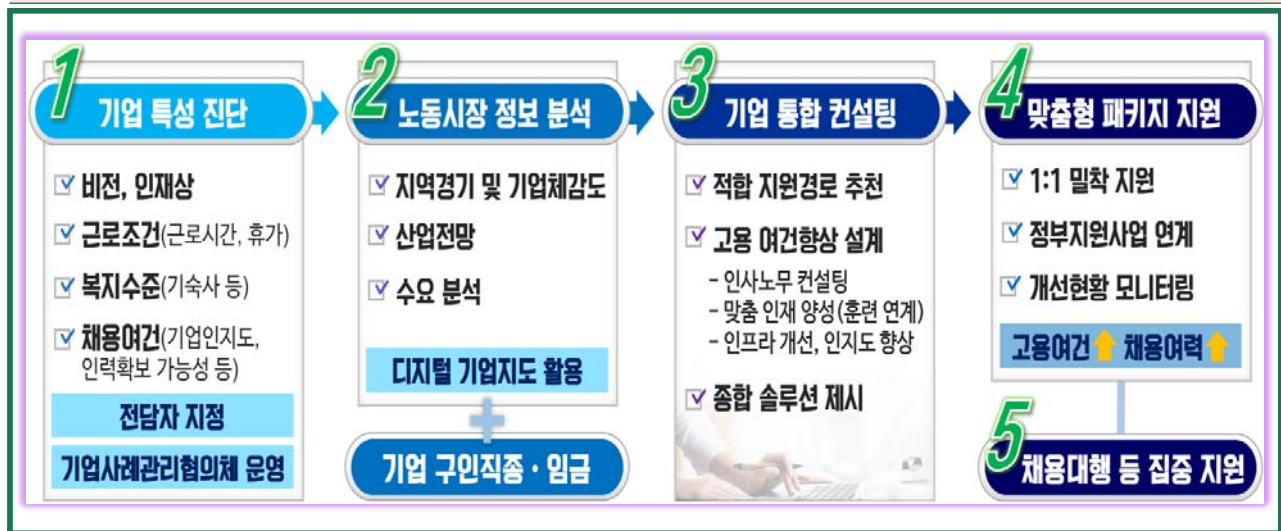
1. 여수고용노동지청	7
가. 고용장려금	7
나. 최저임금	18
다. 산재예방	19
라. 외국인고용	22
2. 순천시	26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
4. 한국폴리텍대학	28
5. 한국산업인력공단	34
6. 안전보건공단	42
7. 근로복지공단	46

1-가-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구인 일자리 수요를 기업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보다 밀착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하는 맞춤형·체계적 서비스 제공

- (목적) 구인 애로 기업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도모

기업에는 구인 애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대상) 지역의 산업 특성, 경기 변동 현황, 구인·구직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인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 핵심 인재 부족 등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 근무조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기업의 애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 인지도 제고, 사내 훈련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진행절차) 전담자가 지원 정책 연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1:1 밀착 관리,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지원을 통해 구인애로 요인 해소
 - * ① 참여기업과 해결방안 공동 모색 → ② 고용센터, 중기청,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 발굴 → ③ 전담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④ 서비스 제공 여부 모니터링

여수고용노동청

순천고용센터

김용운 주무관

☎ 061-720-9126

1-가-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기업요건)**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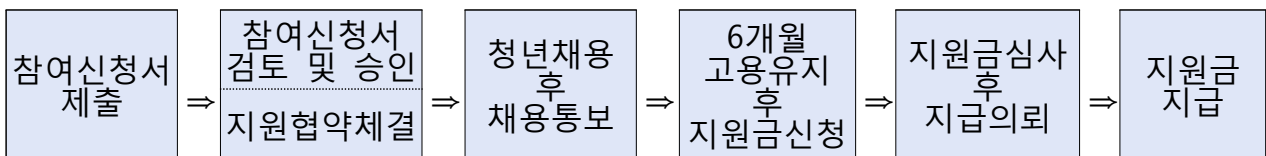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청년 1인당 월 60만원X12개월,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수도권은 50%), 최대 30명

□ 처리 절차



* 참여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위탁운영기관	전화번호	관할지역
(사)전남경영자총협회	☎ 061-741-8108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여수상공회의소	☎ 061-641-4006	
광양상공회의소	☎ 061-761-5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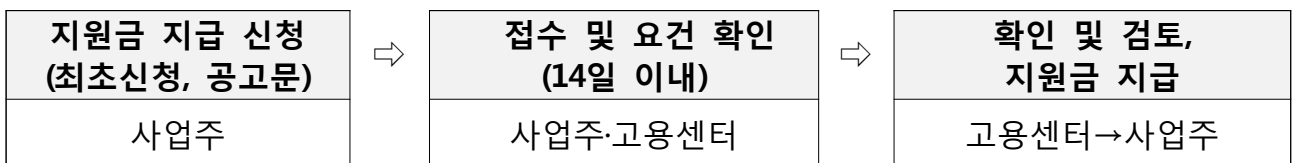
1-가-③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분기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기업에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등 제외
- (지원요건) ❶ 신청일 이전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일 것, ❷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할 것
- (지원대상 근로자) 장려금 신청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초과인 근로자
 - *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분기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 인원수*3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처리 절차



□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이은정	☎ 061-720-9169
여수	여수고용센터	정현화	☎ 061-650-0150
광양	광양고용센터	박소현	☎ 061-798-1917

1-가-④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불안해진 고용 환경에도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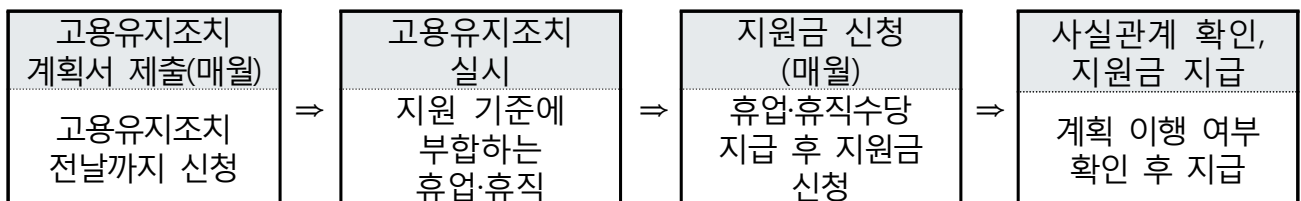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를 한 사업주
 - *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보다 15% 이상 감소,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추세
- (지원 요건) ①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휴업·휴직 실시, ②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③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간 고용조정 제한

구 분	지원 기준
휴업	1개월 간 전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중 20%를 초과하여 단축 휴업 실시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지원 수준) 사업장별 연간 180일 지원

구분	지원 수준	지원 한도
일반업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1일 6.6만원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6.6만원)

□ 처리 절차



□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최선영	☎ 061-720-9161
여 수	여수고용센터	임인성	☎ 061-650-0178
광 양	광양고용센터	박유경	☎ 061-798-1908

1-가-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요건) ①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타임레코더, 모바일 근태관리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④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단,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해당 월 부지급

- (지원 대상 근로자)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개월 이상 단축(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①장려금 월 30만원, ②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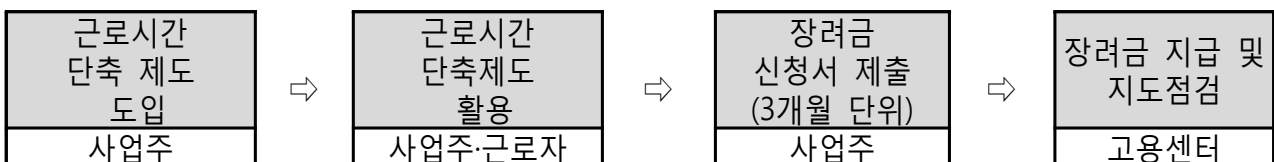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 처리 절차(요건형)



□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김주은	☎ 061-720-9164
여수	여수고용센터	정현화	☎ 061-650-0150
광양	광양고용센터	박유경	☎ 061-798-1908

1-가-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24 신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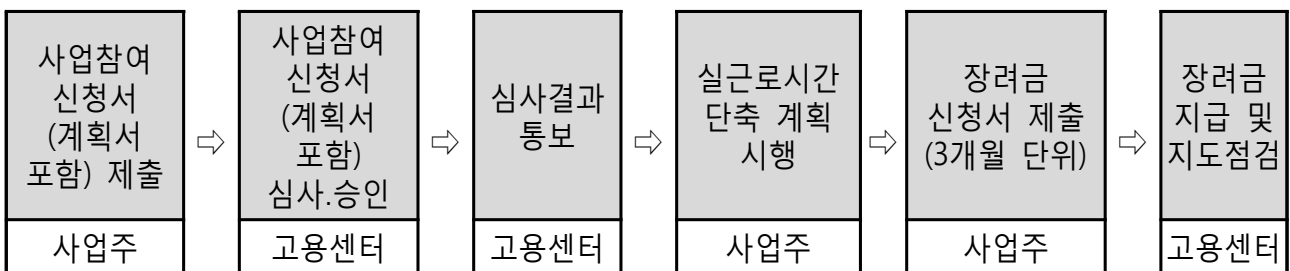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요건) ①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③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㉔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㉕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지원수준)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한도) 지원 대상근로자의 30%* 지원
 - * 최대 100명,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처리 절차(공모형)



□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최선영	☎ 061-720-9161
여수	여수고용센터	정현화	☎ 061-650-0150
광양	광양고용센터	박유경	☎ 061-798-1908

1-가-⑦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30만원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인센티브(1~3호)> 사업장별 1~3번째 사례 월 40만원

- (신청 시기)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원금의 50%는 3개월 단위 신청
-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2개월, 월 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 (신청 시기)

- 지원금의 50%는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는 출산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김주은	☎ 061-720-9164
여수	여수고용센터	황은희	☎ 061-650-0158
광양	광양고용센터	박유경	☎ 061-798-1908

1-가-⑧ 모성보호 제도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보장되어야 함

- (유급의무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국가 지원

- (지원수준) 통상임금 전액, 월 210만원 한도(최초 60일 동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유산·사산휴가 급여

- (대상)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여성 근로자

- (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기간	내용	비고
~ 11주	유·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불인정
12주 ~ 15주	유·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유급의무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국가 지원

- (지원수준) 통상임금 전액을 부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월 210만원 한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요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것, 분할 사용횟수 1회

- (유급의무기간) 10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 산입 제외)

- (지원수준) 최초 5일분 국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상한 410,910원)

○ 수급권 대위

-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한 사업장
- (지원수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상한액 초과 지원 불가)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대상)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시 거부할 수 있음
-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수준) 통상임금 80%, 근로자에게 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대상)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 사업주의 거부 사유
 -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한 경우 제외)
 - ③ 업무 성격상 단축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기간) 12개월(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4개월)
- (단축시간) 주15 ~ 35시간
- (지원수준) 주 최초 5시간(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나머지 시간(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최 현	☎ 061-720-9163
여 수	여수고용센터	황은희	☎ 061-650-0158
광 양	광양고용센터	전제효	☎ 061-798-1914

1-가-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실제 기업에서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운영형태) 훈련연계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은 필요한 참여자에 한정하여 제공

○ (훈련연계형) 1~3개월 간 직무 수행을 기초로 직무 적응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경험 제공

○ (체험형) 단기간(20~30일)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지원내용) 참여수당(참여자) 및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기업)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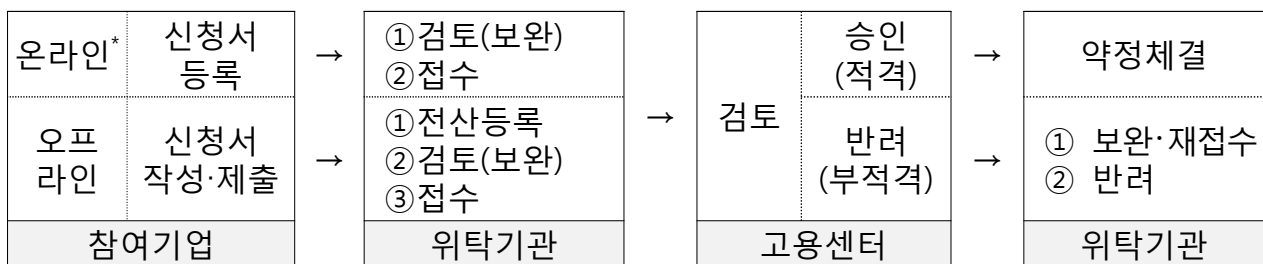
○ (훈련연계형)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일 최대 7.1만원,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운영수당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체험형) 참여수당 일 2.2만원, 참여기업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지급

□ (참여자의 지위) 일경험 수련생

* 예외적으로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참여

□ (참여기업 신청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www.kua.go.kr)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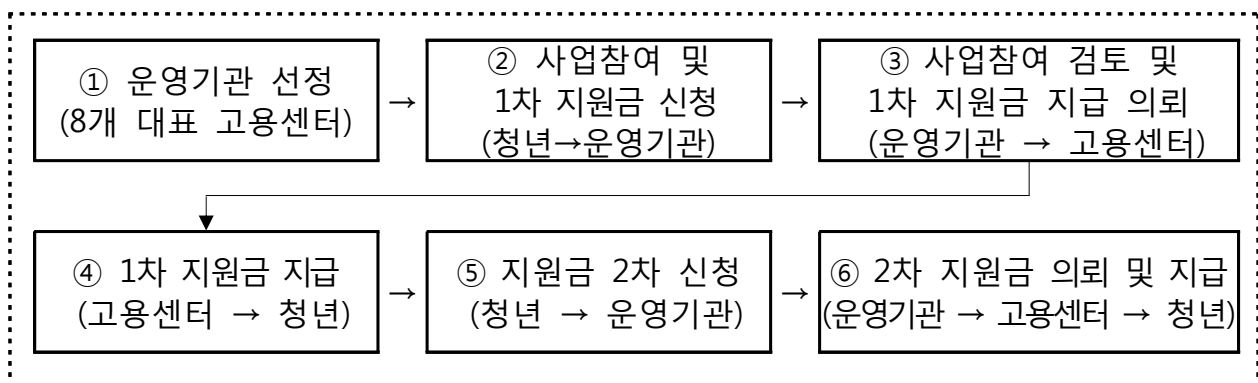
위탁운영기관	전화번호	관할지역
(사)전남경영자총협회	061-741-8107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여수고용노동지청	순천고용센터	문정애 주무관	☎ 061-720-9132
----------	--------	---------	----------------

1-가-⑩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24 신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 ‘24.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무한 만 15세~34세 청년
 - * 취업애로청년 우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 **(대상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 빈일자리: 제조업 외 4개 업종 포함
 -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대상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여부 확인 필요
- ☐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계약 등
-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
- ☐ **(참여·신청 가능 기간 및 접수 기간)**
 - 청년은 채용일 기준, 3개월 근무의 다음날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자리채움 사업참여 가능
 - * 지원금 신청은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해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허용
 - 청년은 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 내에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 **(추진체계)** 고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 ☐ **신청방법:** 대상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전남경영자총협회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신성수 본부장

☎ 061-741-8115

1-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박재규 팀장

☎ 061-650-0127

1-다-①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

*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대중소 안전보건수준 격차 완화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함.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서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 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함

- 시행일: 2024년 1월

☞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

1-다-②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로 추진하게 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은진 감독관	☎ 061-650-0131
----------	---------	---------	----------------

1-다-③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

- ☐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함
-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함
- ☐ 시행일: 2024년 2월(잠정)
- ☐ 적용례: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1-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업종	허용 대상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 고용 조정으로 이직 없어야 함
- 체불된 임금이 없거나,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건이 행정종결된 경우

□ 제조업종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대장, 하도급계약서(조선업일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사이트에 신청
- 구인노력기간 ('24.1.10. 시행)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원칙 7일. 예외 3일*
- * 추가로 생활정보지(사랑방, 교차로 등) 광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로부터 1년간 고용제한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건설업 제외)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한 적이 없거나, 자율합의 계약 해지 등 사유로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의 경우(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신청기간: 취업활동기간(재고용)만료일 90일전부터 7일전까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용자는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

- 신청기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변경횟수: 3회(재고용기간 중에는 2회)

□ 사업장 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

-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 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
-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 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여수고용노동지청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23.11.27.부터 시행)

- 적용범위: 여수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 전체 동일 적용
 -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숙소제공 유형에 따른 숙소비 공제 상한기준

월세 기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가 자료의 평균(50%)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 임차료에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을 기준으로 산정
- 숙소 유형별 공제 상한 기준

구분	3.3제곱미터당 월세액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최저가	
단독/다가구	33,250원	-	'23.1.1~10.31. 평당(계약면적) 실거래가의 평균값
아파트	29,173원	-	
연립/다세대 (빌라, 원룸 등)	35,594원	20,112원	

- * 가이드라인 금액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 개의 숙소에 다수(N명)가 거주하는 경우 또는 N명의 거주를 예상하고 임차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과 액수는 1/N 이하로 산정되어야 함
- *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지 않은 공간은 제외
- * 연립/다세대 최저가는 실거래가의 하위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가설 건축물 등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사업장건물[건축물 대장 상(숙소 등)] 20,112원 초과 안됨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 종합상담지원(☎1577-0071)

- (서비스 시간) 연중무휴(09:00~18:00)
- (서비스 내용) 전화상담, 3자통화, 번역상담 등
- (서비스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1577-0071 + '해당언어 국가번호' + *							
1번	한국	2번	중국	3번	베트남	4번	필리핀
5번	영어	6번	태국	7번	인도네시아	8번	스리랑카
9번	몽골	10번	우즈벡	11번	캄보디아	12번	방글라데시
13번	파키스탄	14번	네팔	15번	미얀마	16번	키르기스스탄
17번	동티모르	18번	라오스				

□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eps.go.kr)

여수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김종구 주무관	☎ 061-720-9135~6
---------	-------	---------	------------------

2.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중소기업 4.0 구축(순천시)

4차산업혁명시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으로 대응전략과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육성(도비 직접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 (개요) 관내 업체 선정 / 269.4백만원(시비)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출연금 집행(24.3.) → 사업 홍보 및 안내(공고)
-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술, 판매실적이 우수한 기업선발 지원
 -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24.6~7.) → 기업 선정 (24.8.)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고용환경개선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개요) 2개사 / 40백만원(도비 12, 시비 28)
 - (추진일정) 사업 공고(23.3.) → 기업 선정(23.9~11.) → 사업비 정산(24.12.)
- 농공단지 맞춤형 특화지원: 농공단지 기업경영개선 역량강화 지원
 - (개요) 주암농공단지 2개사 / 20백만원(시비)
 -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24.3~4.) → 실태조사 및 평가(24.5.) → 기업 선정 및 지원(24.5~10.) → 성과점검(24.12.) → 사업비 정산(25.5.)
-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뿌리기업 육성지원
 - (개요) 관내 뿌리기업 / 900백만원(시비/도비직접지원사업)
 - (추진일정) 사업공고(24.3.) → 협약체결(24.7.) → 사업비 정산(24.12.)
- 강소기업 육성사업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제작 등
 - (개요) 강소기업 3개사 / 240백만원(도비 150, 시비 90)
 - (추진일정) 사업 공고(24.3.) → 협약 체결(24.4~5.) → 사업비 정산(24.12.)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제작 등
 - (개요) 중소중견기업 / 558백만원(시비/국도비직접지원사업)
 - (추진일정) 사업 공고(24.2.) → 협약 체결(24.3~8.) → 스마트공장 구축 (24. 9.) → 사업비 정산(25.12.)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박성은 주무관	☎ 061-749-4407
-----	--------	---------	----------------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운용 목적 및 방향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 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지원개요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4,943억원)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 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기업성장지원팀	우민석 과장	☎ 061-729-1550
----------------------	---------	--------	----------------

4-가. 취업연계 국비 교육생 모집 및 양성(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은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으로 개교한 이후 50여년간 약 270만여 명의 산업 인력을 배출하였고, ‘국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 대학’

□ 폴리텍만의 강점

- 높은 취업률(취업유지율)
 - ‘취업하면? 폴리텍’ 74.3%의 취업률 및 89.4%의 취업유지율 (23년 정보공시 기준)
- 입학부터 수료까지 전액 무료
 - 교육비, 실습재료비 전액무료, 기숙사, 식비 국가지원(식비 주말제외)수당 및 교통비 지급
- 실무중심의 커리큘럼
 -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으로 이론 30%, 실무 70%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
- 최고의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 기획, 설계, 가공, 시제품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 원스탑 통합실습 가능

□ 생애주기별 과정 안내

과정별	입학자격	교육기간	특전
전문기술과정	■ 취업을 원하는 만15세이상	■ 주간 10개월	■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면제 (70% 이상 교육이수자)
일반계고 위탁과정	■ 일반고등학교 3학년 진급예정자	■ 주간 1년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입영 및 예비군 훈련연기 가능 ■ 미필자 취업특기병 입대가능
신중년과정	■ 취업을 희망하는 만40세 이상 미취업자	■ 주간 6개월 ■ 야간 3개월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여성재취업과정	■ 만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 주간 3개월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안내

과정평가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

○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구분	일반자격검정형	과정평가형
응시자격	해당자격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 이수한 누구나
자격증 (기재내용)	자격종목명,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 과정평가형 제도의 장점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능	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1차 평가(내부) 및 2차 평가(외부) 모두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	취업에 유리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	---	---------------------------

○ 우리캠퍼스 전학과 전직종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대시행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교학처	백현희 과장	☎ 061-720-1514
------------------	-----	--------	----------------

4-나. 꿈드림공작소(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연중 개방하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교육 및 체험 학습을 지원

☐ 참여대상자

- 기업체 재직 근로자, 일반인, 비 고용보험 적용자
- 현역군인 및 군 전역 예정자
-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생
- 재학생 등 전 국민

☐ 운영시간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연중 운영
 - 평일 09시~21시
 - 토요일 09시~17시(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참여프로그램

- 맞춤형 기술교육 연계지원
- 자격취득 지원을 위한 기술 교육
-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시제품 개발)
- 체험학습 지원(초,중,고등학교 진로체험)
- 실감형 체험부스 구축

☐ 참여혜택

- 무료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꿈드림공작소	천정필 교수	☎ 061-720-1547
------------------	--------	--------	----------------

4-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우선지원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전남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직무교육 훈련과정 운영

☐ 참여혜택

- 교육훈련비 정부지원(국비) 훈련(고용보험기금)
- 교재, 실습재료, 다과 무료 제공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활용가능(시설, 장비, 교강사)

☐ 주요 훈련분야(협약기업 수요맞춤형 과정 설계)

분야	주요 훈련과정
전기/전자	전기에너지설비 설치 및 운용 실무
기계/자동화	스마트센서활용 공정유지보수
품질검사	산업설비결함여부 검사평가 실무
재료	WPS에따른 용접실무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교육시간: 계속하여 5일 20시간 이상
 - 지원금: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50%(최대지원한도)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공동훈련센터	박수진 파트장	☎ 061-720-1523
------------------	--------	---------	----------------

4-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재직자형>(한국폴리텍대학)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채용(입직1년 이내)하여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을 병행하는 일터중심의 교육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를 통해서만 사업 참여 가능

☐ 참여혜택

- (기업) 신규직원 재교육 비용의 절감과 신규직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핵심인재 양성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BEST HRD기업 심사평가 우대,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병역 특례업체 선정 가점 등 외 교육비, 운영 전담 인력수당, 참여자 훈련장려금 등 직접 지원금 지급

(※신입사원 1인 기준 연 평균 1천만원 이상)

- (신입사원) 맞춤형 현장훈련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적응력 향상, 제한 경쟁을 통한 국가자격 취득(외부평가 합격 시)

☐ 참여 및 지원자격

- (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단, 임금체불 및 산재 다발 기업 외)
- (신입사원) 만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신규 입직자(1년 이내)
(외국 국적자는 F4~F6비자 소지 시 참여 가능)

☐ 지원신청 절차

- (참여절차) 학습기업 지정 신청 ▶ 약정체결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 훈련과정 개발 ▶ 훈련실시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공동훈련센터	이 일 파트장	☎ 061-720-1530
------------------	--------	---------	----------------

4-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형>(한국폴리텍대학)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직접 지원금 발생)

☐ 참여대상

- (재직근로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일부)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채용예정자) 사업장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으로서, 훈련 실시 전에 채용 약정이 되어 있는 자
- (공통조건)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참여혜택

- (지원금) 훈련교육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까지 지원
 - 상세사항 별도 확인/각 지원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

☐ 지원신청절차 (위탁형)

- (기업) 훈련위탁계약 체결(훈련의뢰) 및 비용 선지급
- (훈련기관) 훈련교육개발 ▶과정인정신청 및 훈련실시신고 ▶훈련과정 운영
▶ 훈련수료보고 ▶ 훈련비용의 정산 후 환급
(※위탁형 외 자체운영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산학협력처	이 일 파트장	☎ 061-720-1530
------------------	-------	---------	----------------

5-가. 일학습병행(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 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 개요

○ 참여기업 대상

-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50인(20인)미만이라도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았거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또는 관계부처 전담기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추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까지 예외 적용 가능

○ 훈련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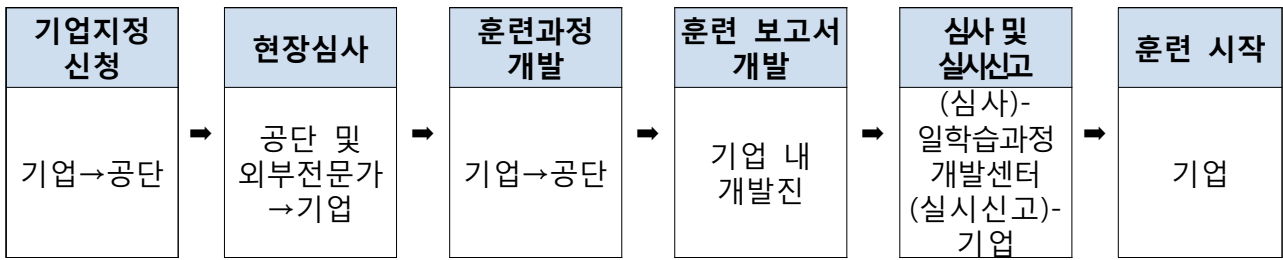
- 고용보험 가입일: 실시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규 입직자

□ 지원내용 및 추진 절차

○ 훈련지원 비용

지 원 사 항		지 원 내 용
훈 련 비 용	현장훈련(OJT)	기준단가의 4,000원의 1~2배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인원×훈련시간×조정비율
	현장외훈련(OFF-JT)	기준단가의 6,500원의 1~2배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인원×훈련시간×조정비율
신규직무 개발비		직무 4개까지 추가 및 개발비 지원(직무당 210만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학습근로자 수 기준으로 최소 33.3~133.3(천원)
HRD담당자(행정 담당) 수당		25만원 정액
훈련지원금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 한도
외부평가 인센티브		합격 시 1인당 '20(만원)×참여개월 수' 인센티브

○ 추진절차



○ 참여 혜택

- 현장훈련비용 및 개발비 등 훈련 전반에 대한 비용 지원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1순위 우대
- 조달청 품질보증 지정심사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직업능력개발부	신희지 주임	☎ 061-720-8543
------------------	---------	--------	----------------

5-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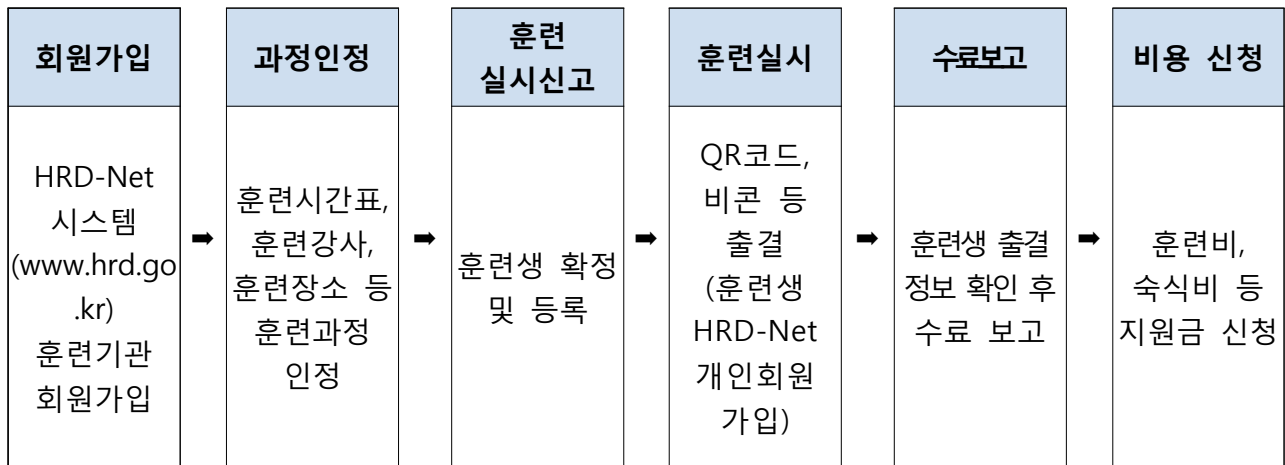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훈련주체: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훈련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훈련내용: 훈련대상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관련된 교육
 - 외국어(토익 등 자격증 제외) 및 직무법정훈련은 50% 지원
 - 공통법정훈련, 취미활동, 레크레이션, 스포츠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훈련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범위
 - 훈련비: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인원×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숙식비: 1일 식비 3,300원, 숙박비 14,000원(월 33만원 한도)
- * 지원조건: 1일 5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지원한도: 해당연도 납입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까지(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 산출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훈련 실시 요건

- 훈련시간: 최소 4시간 이상
- 정 원: 최소 1명 ~ 최대 60명 이내
- 장 소: 1인당 1.5㎡ 이상
- 강사요건: 해당분야 실무경력 최소 1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취득자 등

□ 추진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직업능력개발부	한창업 주임	☎ 061-720-8544
------------------	---------	--------	----------------

5-다. 체계적 현장훈련<S-OJT>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장 내에서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숙련, 현장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훈련

□ 사업 개요

- 참여 대상기업: 현장훈련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부적합 직무: 세무, 회계, 외국어, 경비, 컨설팅, 보건의료, 단순반복업무, 법정 의무훈련, 불특정다수 대상 서비스 직무 등
-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제품의 제조·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한 직무 등 현장훈련에 적합한 직무
- 훈련유형

구분	일반훈련	신기술특화훈련
목표	근로자 숙련도 향상	현장 문제해결 및 개선
훈련시간	4시간~60시간(1개월이내)	1년이내
훈련운영	- PM주도형 과정개발 - 훈련교사 주도형 강의 및 코칭, 노하우 전수 - 훈련시간표 활용	- 훈련참여자 주도형 - 프로젝트 수행방식 - 훈련일정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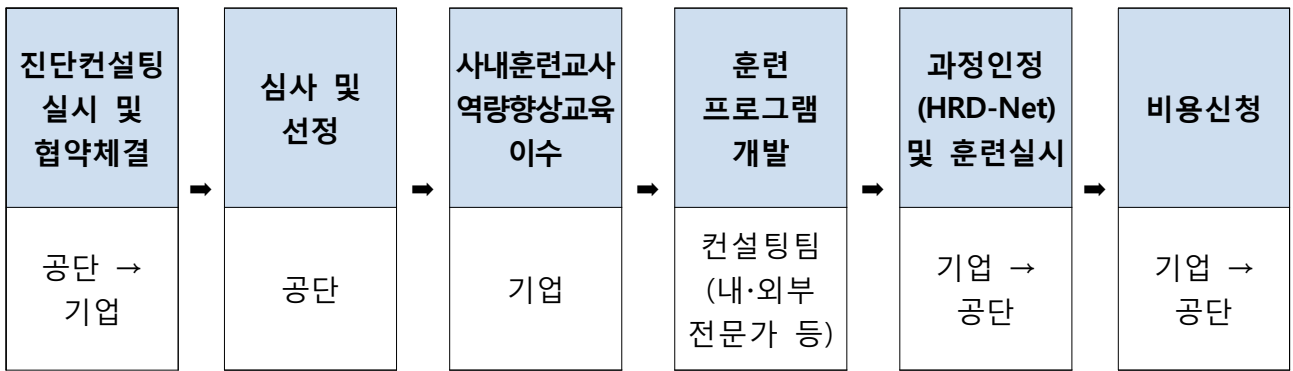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 개발 지원
- 비용지원

구분	세부내용
과정개발비	과정개발 담당 직원에게 정액 지급(50만원)
훈련비	사업주에게 지급(단가×시간×인원) ※ 특화훈련은 300% 상향 지원
사내교사 수당	사내교사 직원에게 훈련시간에 따라 정액지급(최대 50만원)

※ 위 지원내용은 '23년도 공고사항이며, 2024년도 2월~3월 중 공고사항 확인 필요

□ 참여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직업능력개발부	주 의 과 장	☎ 061-720-8542, 8552
------------------	---------	---------	-------------------------

5-라. 능력개발클리닉(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을 진단하고 기업상황에 맞게 연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개발, 훈련실시 등 지속적인 능력개발활동으로 기업 내 체계적 훈련 로드맵을 구축하고 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3년간 밀착관리하여 종합적 HRD서비스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HRD이음컨설팅 참여기업
 - 기업 내 1년 이상 재직 중인 HRD담당자를 보유한 기업
- 기업 수행사항
 - 훈련 계획 실행(기업직업훈련 참여)
 - 기업훈련성과분석 지원
 - 지역 내 HRD리더 역할 수행 등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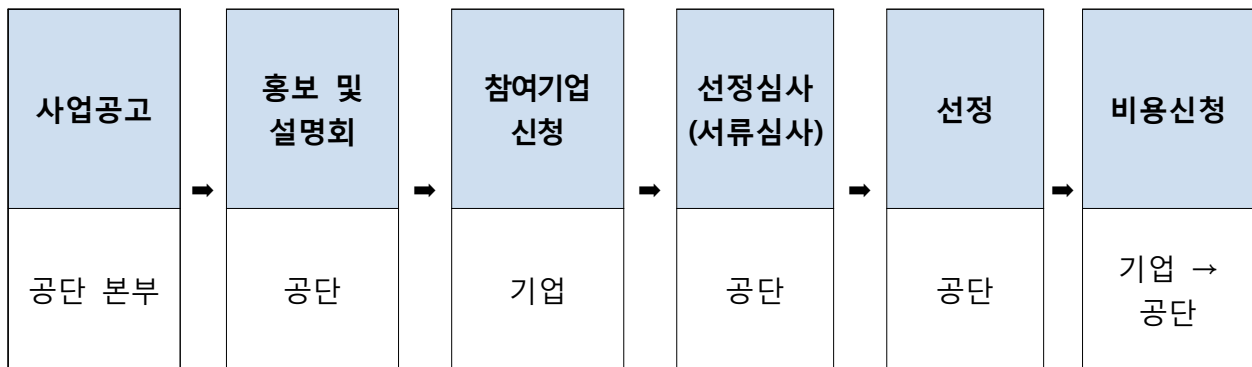
- 기업컨설팅(성과 및 심화, 과정개발컨설팅)
- 훈련로드맵 운영 및 과정개발
- 기업단위 훈련실시 종합 서비스
- 기업 내 HRD담당자 육성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혜택 (3년간)
기업	컨설팅	필수 •성과컨설팅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최대 840만원 (연 280만원)
		선택 •심화컨설팅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960만원
		선택 •과정개발컨설팅	사업별 지원 한도에 따름
	훈련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	필수 •연간 훈련계획 수립: 50만원 •클리닉 성과 보고: 100만원	최대 450만원 (연 150만원)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혜택 (3년간)
기업	판로개척 /인력채용	선택	•ISC 및 RSC 주관 행사(박람회 등) 참가 지원	최대 600만원 (연 200만원)
	HRD 성과교류	선택	•기업직업훈련 우수사례 공유(내·외부) -지원기준: 회당 20만원 정액 지급	최대 240만원 (연 80만원)
HRD 담당자	HRD 역량개발	필수	•HRD담당자 역량개발비 -지원기준: 회당 10만원 정액 지급	최대 300만원 (연 100만원)
		선택	•훈련과정 자체 개발 -클리닉 선정기업이 S-OJT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 한 경우 과정개발비 정액 지원	최대 2,070만원 (연 690만원)

※ 위 지원내용은 '23년도 공고사항이며, 2024년도 2월~3월 중 공고사항 확인 필요

□ 참여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직업능력개발부	주 회 과 장	☎ 061-720-8542, 855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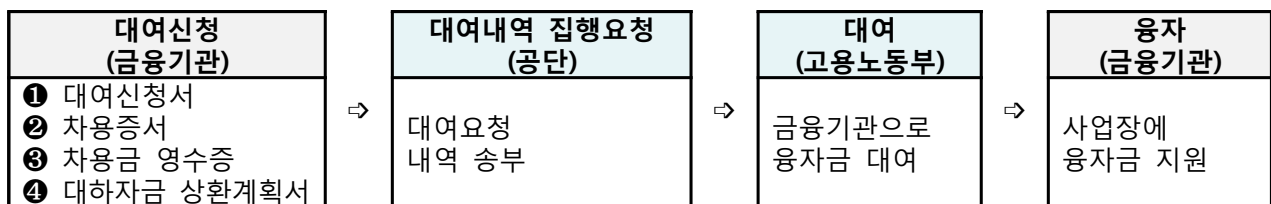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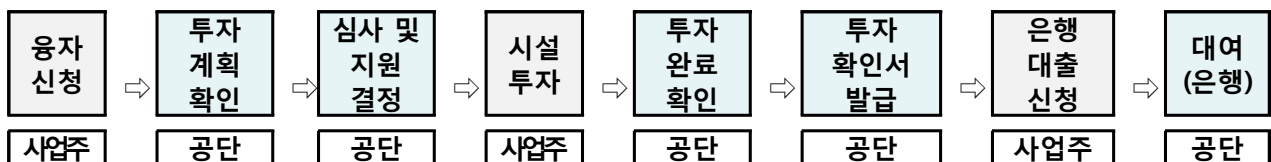
6-가.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안전보건공단)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주요 지원설비
 -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부속설비 포함)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예방설비 및 장비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제출서류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방법
 - 용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대출거래예정확인서 등
 - 클린사업장조성지원(clean.kosha.or.kr)-알림마당-서식모음자료실-산재예방 시설용자-'24년 산재예방시설 용자사업 신청서류

□ 추진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종률 차장	☎ 061-689-495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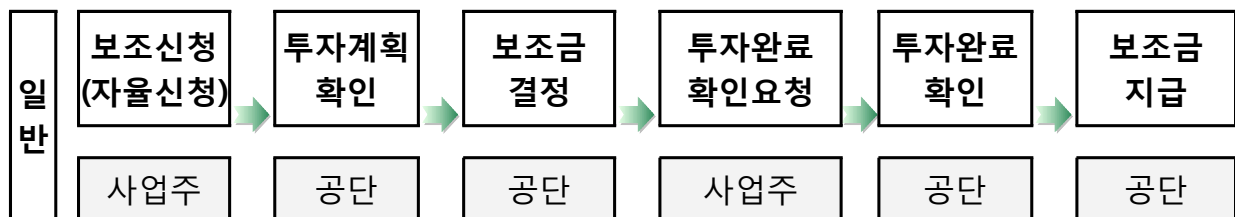
6-나.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비용 보조지원(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 50인 이상이라도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이하인 사업장 포함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지원조건: 품목 당 공단 판단금액의 70%
- 주요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건설기계 안전장치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23종)
 - * 방호덮개 등 끼임방지시설, 지게차 및 화물차 충돌방지장치,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고소작업대, 복합가스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품목, 국소배기장치 등 건강장해 예방설비 등
- 제출서류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방법
 - 보조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 클린사업장조성지원(clean.kosha.or.kr)-알림마당-서식모음자료실-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 2.(고위험개선)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오프라인 양식(제출서류)

□ 추진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종률 차장

☎ 061-689-4953

6-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舊 안전투자 혁신사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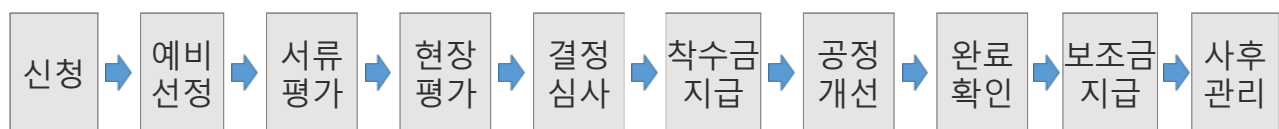
○ 지원 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제조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보유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 또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공단)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내용: 정부지원 방식과 정부·원청 공동지원 방식으로 추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정부 50%(최대 1억원) 지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정부 40%(최대 8천만원), 원청 10%(최대 2천만원) 공동지원

□ 추진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종률 차장	☎ 061-689-4953
----------------------	-------	--------	----------------

6-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안전보건공단)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대해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보급·확산)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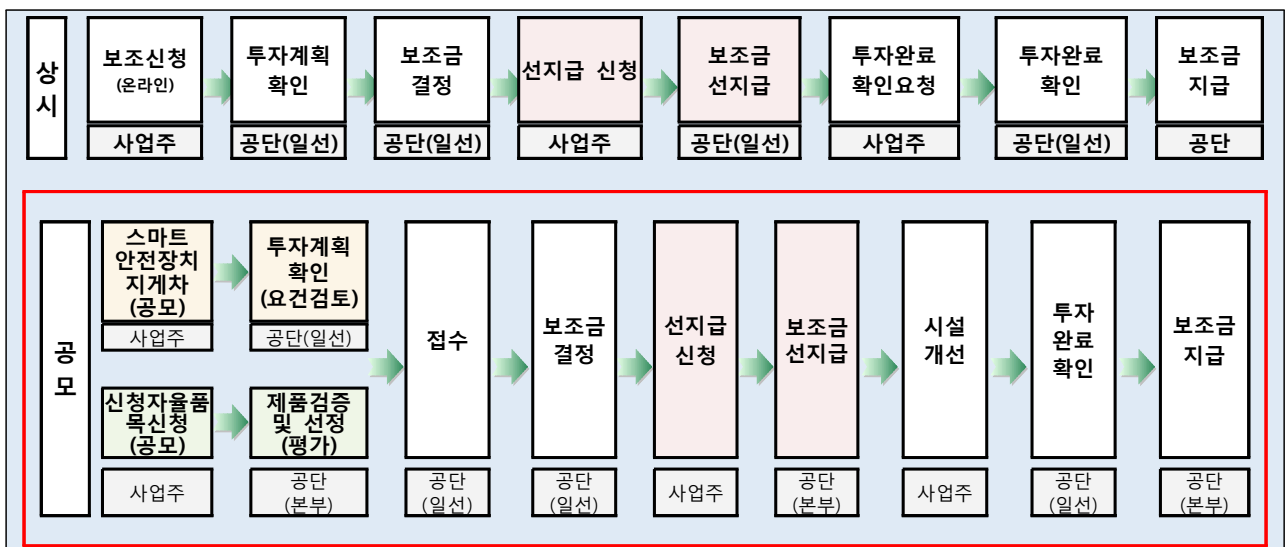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 50인 이상이라도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이하인 사업장 포함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지원조건: 품목 당 공단 판단금액의 80%
- 신청방법: 지원방식·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상시 접수	공모 접수	
	스마트 안전장치 지게차	신청 자율 품목
기존 28종 추진	본부주관 공모	본부/일선주관 공모

○ 주요 지원설비(28종)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고소작업대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지 전동지게차, 근력보조슈트,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치 등 28종

□ 추진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종률 차장

☎ 061-689-4953

7-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제도

□ 도입배경

- 중소기업장 체불방지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한계
- 안정적 수익률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국회통과('21.3.24.)→공포('21.4.13.)→시행('22.4.14.)→계약체결 개시('22.9.1.)]

□ 도입효과

사업주에게 좋은 점		근로자에게 좋은 점	
사용자 부담금 지원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 3년간 지원	근로자 재정 지원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자부담금의 10% 3년간 지원
수수료	수수료 0원(4년)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3종 서류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안정적 수익률	공동 조성된 기금으로 전문가가 운영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 손금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호
분할 적립하여 부담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믿을 수 있는 투자 의사 결정	노사정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

□ 2024년 재정지원 내용

- 사업주 수수료 면제(4년간 "0"원)
-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3년)

근로복지공단순천지사

경영복지부

임성숙 차장

☎ 061-805-0204

7-나.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을 원직장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으로 차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 (지원조건) 산재장해인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 (지원기간 및 금액) 최대 12개월 범위 내(최소 540만원~최대 960만원)
 - 상한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실제 임금액
 - * 장해 제1급~제3급(월 80만원), 제4급~제9급(월 60만원), 제10급~제12급(월 45만원)
- ☐ (신청방법)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청구(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 (그 밖의 사업) 재직근로자에게 제공할 만한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저소득 및 계약직 재직근로자에게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

- ▶ 월 315만원 이하 소득자 및 2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
- (융자조건) 금리 연 1.5%(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 (융자항목 및 한도)

융자항목	내용	융자한도
의료비	본인,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로 납부한 금액	1,000만원(실제비용 내)
혼례비	본인, 자녀의 혼례 비용	1,250만원
장례비	본인, 배우, 부양 부모의 장례 비용	1,000만원
부모요양비	부양하는 부모의 노인성 질환 진단 이후 드는 요양 비용	1,000만원(1인당 500만원)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교육 비용	1,000만원(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 비용	1,000만원(1인당 5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30%이상 임금감소 조치가 있을 때 임금감소분에 대한 융자	1,000만원(감소임금 내)
소액생계비	전월에 비해 30%이상 임금이 감소했을 때 긴급생계비	200만원

- (신청방법)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순천지사	재활보상부 경영복지부	김단영 과장 엄지원 대리	☎ 061-805-0276 ☎ 061-805-0203
------------	----------------	------------------	----------------------------------



MEMO